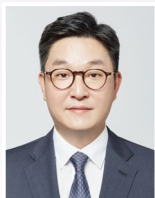


March
2025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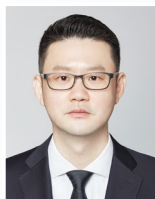
조세 그룹 | TAX Group

CONTACT



외국변호사 오혁

T: 02.772.4349

E: steve.oh@leeko.com

외국변호사 이용지

T: 02.772.4392

E: yongji.lee@leeko.com

외국회계사 유지희

T: 02.6386.0778

E: olivia.ryu@leeko.com미국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활용한 아웃바운드 투자 안내

최근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진행 시,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른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D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미국 연방세법상의 적격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이하, **RIC**)로 취급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 및 이자를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한 원천세에도 세제혜택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tax leakage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럭처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개정세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국내 투자자들이 아웃바운드 투자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투자신탁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투자자들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익률 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는 바, 이를 고려할 때에도 BDC를 활용한 투자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BDC의 개요와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BDC 개요

BD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폐쇄형 투자회사(close-ended investment company)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벤처,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되는 vehicle입니다.

BDC는 투자 자산의 70% 이상을 시장 가치가 2억 5천만 달러 미만인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또한, BDC는 미국 연방세법상의 세제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이하 참조), 일반적으로

상장된 BDC의 배당 수익률은 8~11% 정도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 미국 연방세법상의 세제혜택 관련

BDC는 미국 연방세법상 1) 일반법인(corporation) 또는 2) RIC로 설정되도록 선택(elect)할 수 있는데, RIC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할 때) 미국 연방세법상의 조세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바, 실무상 일반법인(corporation)보다는 RIC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RIC 지위요건

미국 연방세법상 RIC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간배분요건(Annual Distribution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소득 중 최소 90% 이상을 매년 주주들에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 원천소득요건(Source-of-Income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 총 소득의 90% 이상이 배당, 이자, 주식 또는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특정 유가증권 대출에 대한 소득, 주식 또는 유가증권 투자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자산분산요건(Asset Diversification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의 매 분기마다 총 자산의 50% 이상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미국 정부 또는 타 RIC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가증권의 경우(RIC 발행 유가증권 제외), 단일의 발행기관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의 발행기관에 총자산의 25%를 넘어서는 지분을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 미국 법인세 관련

BDC가 미국 연방세법상 일반법인(corporation)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21%의 세율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BDC가 RIC로 설정되어 상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배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BDC 단계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미국 법인세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천세 관련

미국 연방세법상 RIC로 설정된 BDC가 이하 열거된 특정 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국 연방세법상의 예외 규정(IRC Section 871(k))에 따라 미국에서의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미국원천이자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interest-related dividends); 또는
- 양도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capital gain dividends)

참고로, 일반 배당금(ordinary dividends)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 또는 15%의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BDC는 본질적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BDC 단계에서의 법인세 및 투자자 입장에서 원천세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조세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미국 BDC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 진행 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BDC를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